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39호 2012년 12월 3일(월)

고 시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2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고시 제 2012- 57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구제역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속 초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접종
2. 지 역 : 속초시 전체
3. 대상가축 : 속초시 관내 소(한·육우, 젖소) 및 돼지, 염소, 사슴
4. 실시기간 : 2012. 12. 5 ~ 2012. 12. 6
5.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및 접종반 접종
6. 백신수령
   가. 자가접종 :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 후 농가에 공급
   나. 접 종 반 : 농업기술센터 접종반이 농가에 방문하여 접종
7. 기타사항
   가. 자가접종 농가는 백신 수령 즉시 예방접종 실시
   나. 가축의 이동은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한하여 허용
   다. 돼지, 염소 축주는 축종별 구제역 예방백신 실시대장 기록·보관 및 가축출하 시 예방 접종확인서 발급·휴대 의무
   라. 백신접종에 의한 유·사산 축에 대한 보상 없음
   마. 접종당일 축주 농장 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검사에 적극 협조
   바.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사. 문의사항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 633-2519)